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두주

1.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이 부속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2조(원산지 상품)의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과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의 원산지 기준은 모든 관세품목에 적용된다.
3.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부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이 선택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5. 세번변경의 요건(이 부속서에서는 이하 "CTC"라 한다)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CTC 규정이 그 밖의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는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40)**이란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마.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 규정이 WO인 경우, 그 상품은 제3.2조(원산지 상품)의 나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전적으로 생산됨으로써,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바. **화학반응(CR)**이란 화학반응 규정을 말한다. 화학반응이 당사자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화학반응”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이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되는 것
- 2) 용매수를 포함한 용제의 제거, 또는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8.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RVC 원산지 기준, CTC 원산지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품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9. 이 부속서는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년판(이하 이 부속서에서 “HS 2012”라 한다)에 기초한다.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b>제1부</b><br><b>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b> |       |         |   |                                  |
| 01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완전생산기준                           |
| 02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脛肉)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제 1류의<br>것은 제외한다) |
| 03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br>물   |                                  |
|  | 03.01 |         | 활어  | 완전생산기준                           |
|  | 03.02 |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br>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br>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3.04 |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br>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br>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br>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i><br><i>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br>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br>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br>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길<br>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i><br><i>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
|  |       | 0304.31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32 | --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br>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33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3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
|  |       | 0304.41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i>Oncorhynchus nerka</i> )·웅코<br>링쿠스 고르부스카( <i>Oncorhynchus gorbuscha</i> )·웅코링쿠스 케<br>타( <i>Oncorhynchus keta</i> )·웅코링쿠스 차비차( <i>Oncorhynchus ts</i>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i>chawytscha</i> ·웅코링쿠스 키수츠( <i>Oncorhynchus kisutch</i> )·웅코링쿠스 마소( <i>Oncorhynchus masou</i>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i>Oncorhynchus rhodurus</i>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i>Salmo salar</i> )],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i>Hucho hucho</i>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2 | -- 송어[살모 트루타( <i>Salmo trutta</i> )·웅코링쿠스 미키스( <i>Oncorhynchus mykiss</i> )·웅코링쿠스 클라키( <i>Oncorhynchus clarki</i>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i>Oncorhynchus aguabonita</i> )·웅코링쿠스 길래( <i>Oncorhynchus gilae</i> )·웅코링쿠스 아파케( <i>Oncorhynchus apache</i>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i>Oncorhynchus chrysogaster</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3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 <i>Pleuronectidae</i> )과·바디대( <i>Bothidae</i> )과·사이노글로시대( <i>Cynoglossidae</i> )과·솔레이대( <i>Soleidae</i> )과·스코프탈미대( <i>Scophthalmidae</i> )과·시타리대( <i>Citharidae</i> )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4 |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유클리티대( <i>Euclichtyidae</i> )과·가디대( <i>Gadidae</i> )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멜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모리대( <i>Moridae</i> )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5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6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i>Dissostichus</i> )종]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               |
|                |   | 0304.51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종·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귤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52 | -- 연어과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53 |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유클리티대( <i>Euclichtyidae</i> )과·가디대( <i>Gadidae</i> )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멜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모리대( <i>Moridae</i> )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54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우스( <i>Xiphias gladius</i> )]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55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i>Dissostichus</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5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귤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의 냉동한 필레( <i>fillet</i> ): |               |
|                |   | 0304.61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62 | --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4.63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세번변경기준  |
|                |   | 0304.6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유클리티대( <i>Euclichtyidae</i> )과·가디대( <i>Gadidae</i> )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멜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모리대( <i>Moridae</i> )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 <i>fillet</i> ): |   |
|                |   | 0304.71 | -- 대구[가두스 모르화( <i>Gadus morhua</i> )·가두스 오각( <i>Gadus oga</i>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i>Gadus macrocephalus</i> )]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304.72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i>Melanogrammus aeglefinus</i> )]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304.73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i>Pollachius virens</i> )]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304.74 | -- 민대구[메루키우스( <i>Merluccius</i> )종·유르피키스( <i>Urophycis</i> )종]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 0304.75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304.7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  |
|                |   | 0304.81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i>Oncorhynchus nerka</i>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i>Oncorhynchus gorbuscha</i> )-웅코링쿠스 케타( <i>Oncorhynchus keta</i> )-웅코링쿠스 차비차( <i>Oncorhynchus tshawytscha</i> )-웅코링쿠스 키수츠( <i>Oncorhynchus kisutch</i> )-웅코링쿠스 마소( <i>Oncorhynchus masou</i>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i>Oncorhynchus rhodurus</i>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i>Salmo salar</i> )],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i>Hucho hucho</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2 | -- 송어[살모 트루타( <i>Salmo trutta</i> )-웅코링쿠스 미키스( <i>Oncorhynchus mykiss</i> )-웅코링쿠스 클라키( <i>Oncorhynchus clarki</i>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i>Oncorhynchus aguabonita</i> )-웅코링쿠스 길래( <i>Oncorhynchus gilae</i> )-웅코링쿠스 아파케( <i>Oncorhynchus apache</i>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i>Oncorhynchus chrysogaster</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3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 <i>Pleuronectidae</i> )과-바디대( <i>Bothidae</i> )과-사이노글로시대( <i>Cynoglossidae</i> )과-솔레이대( <i>Soleidae</i> )과-스코프탈미대( <i>Scophthalmidae</i> )과-시타리대( <i>Citharidae</i> )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4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5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i>Dissostichus</i> )종]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0304.86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i>Clupea harengus</i> )·클루페아 팔라시( <i>Clupea pallasii</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7 | -- 다랑어[터너스( <i>Thunnus</i>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i>Euthynnus (Katsuwonus) pelamis</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4.8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냉동한 것  |  |
|                |   | 0304.91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4.92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i>Dissostichus</i> )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4.93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길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4.94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4.95 |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유클리티대( <i>Euclichtyidae</i> )과·가디대( <i>Gadidae</i> )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멜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모리대( <i>Moridae</i> )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는 제외한다)]  |  |
|                |       | 0304.9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3.05 |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0305.10 | -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0305.20 | - 어류의 간과어란(魚卵)(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 0305.31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귤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305.32 |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유클리티대( <i>Euclichtyidae</i> )과·가디대( <i>Gadidae</i> )과·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멜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모리대( <i>Moridae</i> )과·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39 | -- 기타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세번변경기준   |
|                |   |         |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脍肉)은 제외한다]  |  |
|                |   | 0305.41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i>Oncorhynchus nerka</i>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i>Oncorhynchus gorbuscha</i> )·웅코링쿠스 케타( <i>Oncorhynchus keta</i> )·웅코링쿠스 차비차( <i>Oncorhynchus tshawytscha</i> )·웅코링쿠스 키수츠( <i>Oncorhynchus kisutch</i> )·웅코링쿠스 마소( <i>Oncorhynchus masou</i>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i>Oncorhynchus rhodurus</i>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i>Salmo salar</i> )],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i>Hucho hucho</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42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i>Clupea harengus</i> )·클루페아 팔라시( <i>Clupea pallasii</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43 | -- 송어[살모 트루타( <i>Salmo trutta</i> )·웅코링쿠스 미키스( <i>Oncorhynchus mykiss</i> )·웅코링쿠스 클라키( <i>Oncorhynchus clarki</i>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i>Oncorhynchus aguabonita</i> )·웅코링쿠스 길래( <i>Oncorhynchus gilae</i> )·웅코링쿠스 아파케( <i>Oncorhynchus apache</i>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i>Oncorhynchus chrysogaster</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44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양길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5.4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脍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 0305.51 | -- 대구[가두스 모르화( <i>Gadus morhua</i> )·가두스 오각( <i>Gadus o</i>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i>gad</i>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i>Gadus macrocephalus</i>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5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  |
|                |   | 0305.61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i>Clupea harengus</i> )·클루페아 팔라시( <i>Clupea pallasii</i> )]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0305.62 | -- 대구[가두스 모르화( <i>Gadus morhua</i> )·가두스 오각( <i>Gadus o gad</i>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i>Gadus macrocephalus</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63 | -- 멸치[엔그로리스( <i>Engraulis</i> )종]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0305.64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 )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 )종·실루러스( <i>Silurus</i> )종·클라리아스( <i>Clarias</i> )종·익타루러스( <i>Ictalurus</i>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i>Cyprinus carpio</i>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i>Carassius carassius</i>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종·시리누스( <i>Cirrhinus</i>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뱀장어[앙귤라( <i>Anguilla</i>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i>Lates niloticus</i> )], 가물치[카나( <i>Channa</i> )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0305.6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   |  |
|                |   | 0305.71 | -- 상어 지느러미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72 |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305.7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3.06 |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7 |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8 |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04             |       |         | <b>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b>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b>동물성 생산품</b>   |  |
|                | 04.01 |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2 |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3 |         |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4 |         |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5 |         |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6 |         | 치즈와 커드(curd)   |  |
|                |       | 0406.10 |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406.20 |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406.30 |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406.40 |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0406.90 | - 그 밖의 치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7 |         |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부화용 수정란:  |  |
|                |       | 0407.11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407.19 | -- 기타   | 완전생산기준   |
|                |       |         | - 그 밖의 신선란  |  |
|                |       | 0407.21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407.29 | -- 기타   | 완전생산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0407.90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4.08 |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4.09 | 0409.00 | 천연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4.10 | 0410.0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b>05</b>      |       |         | <b>제5류: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b>  |                                   |
|                | 05.01 | 0501.00 |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02 |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04 | 0504.00 |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제 01류의<br>것은 제외한다) |
|                | 05.05 |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06 |         |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07 |         |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08 | 0508.00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5.10 | 0510.00 |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빃(civet)과 사향, 캔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세번변경기준   |
|                        | 05.11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b>제2부<br/>식물성 생산품</b> |       |         |  |  |
| 06                     |       |         | <b>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07                     |       |         | <b>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b>   |  |
|                        | 07.01 |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2 | 0702.00 |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3 |         |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4 |         |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5 |         | 상추[락투카 사티바( <i>Lactuca sativa</i>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 <i>Cichorium</i>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6 |         | 당근·순무·셀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7 | 0707.00 |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8 |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09 |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07.10 |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7.11 |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7.12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세번변경기준  |
|                | 07.13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7.14 |         | 매니옥(manioc)·취뿌리·살렘(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b>08</b>      |       |         | <b>제8류: 식용외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b>  |   |
|                | 08.01 |         |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코코넛  |   |
|                |       | 0801.11 | -- 말린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1.12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1.1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브라질너트  |   |
|                |       | 0801.2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1.2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캐슈너트(cashew nut)   |   |
|                |       | 0801.3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1.3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08.02 |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아몬드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0802.1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1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 <i>Corylus</i> )종] |   |
|                |   | 0802.2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2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호두  |   |
|                |   | 0802.3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3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밤[카스타네아( <i>Castanea</i> )종]                          |   |
|                |   | 0802.4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4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피스타치오(pistachio):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0802.5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5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   |
|                |       | 0802.6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62 | -- 껍데기를 벗긴 것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802.70 | - 콜라 너트(kola nut)[콜라( <i>Cola</i> )종]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80 | - 빈랑자(areca nut)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02.90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3 |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4 |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5 |         |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6 |         |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7 |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08 |         |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08.09 |         | 살구·체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10 |         |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11 |         |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진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12 |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8.13 |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0813.10 | - 살구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13.20 | - 프룬(prun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13.30 | - 사과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13.40 | - 그 밖의 과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813.50 |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08.14 | 0814.00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b>09</b>      |       |         | <b>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b>  |   |
|                | 09.01 |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0901.1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901.1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체약당사자에서<br>발생한 부가가<br>치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0901.2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체약당사자에서<br>발생한 부가가<br>치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901.2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체약당사자에서<br>발생한 부가가<br>치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901.90 | - 기타  | 체약당사자에서<br>발생한 부가가<br>치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09.02 |         |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       | 0902.10 |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 0902.20 |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완전생산기준  |
|                |       | 0902.30 |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902.40 |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03 | 0903.00 | 마테(ma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04 |         | 후추[파이퍼( <i>Piper</i>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 <i>Capsicum</i> )속]의 열매나 피멘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타( <i>Pimenta</i> )속의 열매                                       |               |
|                |       |         | - 후추:  |               |
|                |       | 0904.1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4.1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고추류[캡시컴( <i>Capsicum</i> )속]의 열매나 피멘타( <i>Pimenta</i> )속의 열매 |               |
|                |       | 0904.21 |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4.2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완전생산기준        |
|                | 09.05 |         | 바닐라  |               |
|                |       | 0905.1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5.2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06 |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
|                |       | 0906.11 |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i>Cinnamomum zeylanicum Blume</i> )]     | 완전생산기준        |
|                |       | 0906.19 | -- 기타  | 완전생산기준        |
|                |       | 0906.2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07 |         |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               |
|                |       | 0907.1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7.2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08 |         |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               |
|                |       |         | - 육두구(肉荳蔻)   |               |
|                |       | 0908.1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8.1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메이스(mace)  |               |
|                |       | 0908.2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8.2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소두구(小荳蔻)   |               |
|                |       | 0908.3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8.3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세번변경기준  |
|                | 09.09 |         |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b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
|                |       |         |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   |
|                |       | 0909.2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9.2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커민(cumin)의 씨  |   |
|                |       | 0909.3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9.3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br>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
|                |       | 0909.6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09.6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09.10 |         |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br>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
|                |       |         | - 생강  |   |
|                |       | 0910.1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0910.1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910.20 | - 사프란(saffron)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0910.30 | - 심황[강황(薑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그 밖의 향신료  |   |
|                |       | 0910.91 |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0910.9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10             |       |         | 제10류: 곡물   | 완전생산기준                       |
| 11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
|                | 11.01 | 1101.00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1.02 |         |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1.03 |         |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                              |
|                |       |         |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1103.11 | -- 밀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1103.13 | -- 옥수수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1103.19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1103.20 | - 펠릿(pellet)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1.04 |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       | 1104.12 | -- 귀리로 만든 것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세번변경기준                      |
|                |       | 1104.19 | --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                       |                             |
|                |       | 1104.22 | -- 귀리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104.23 | -- 옥수수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1104.29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1104.30 |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1.05 |         |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6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7 |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1.08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9 | 1109.00 |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12             |       |         | <b>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b>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12.01 |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완전생산기준         |
|                | 12.02 |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1202.30 | - 종자   | 완전생산기준         |
|                |       |         | - 기타   |                |
|                |       | 1202.41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완전생산기준         |
|                |       | 1202.42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03 | 1203.00 | 코프라(copra)   | 완전생산기준         |
|                | 12.04 | 1204.00 |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05 |         |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완전생산기준         |
|                | 12.06 | 1206.00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07 |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완전생산기준         |
|                | 12.08 |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12.09 |         | 파종용 종자·과실·포자(孢子)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10 |         |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11 |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211.20 | - 인삼   | 완전생산기준         |
|                |       | 1211.30 | - 코카잎  | 완전생산기준         |
|                |       | 1211.40 | - 양귀비줄기  | 완전생산기준         |
|                |       | 1211.90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12 |         |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i>Cichorium intybus sativum</i> ) 변종의 치커리(chicor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                | 12.13 | 1213.00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2.14 |         | 스워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b>13</b>      |       |         | <b>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b>   |  |
|                | 13.01 |         |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3.02 |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                |       | 1302.11 | -- 아편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302.12 | -- 감초로 만든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302.13 | -- 홉(hop)으로 만든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302.1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소호 제 1<br>211.20호의 것<br>은 제외한다) |
|                |       | 1302.20 |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
|                |       | 1302.31 | -- 한천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302.32 |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302.39 | -- 기타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세번변경기준                                       |
| 14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b>제3부</b>   |       |         |  |  |
| <b>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b> |       |         |  |  |
| 15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 15.01 |         |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2 |         | 소·면양·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3 | 1503.0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4 |         |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5 | 1505.00 |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6 | 1506.00 |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7 |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1507.10 |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507.90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8 |         |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09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0 | 1510.0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 2단위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세번변경기준                                     |
|                | 15.11 |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1511.10 | - 조유(粗油)  | 완전생산기준                                     |
|                |       | 1511.90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2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3 |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 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  |
|                |       | 1513.11 | -- 조유(粗油)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1513.19 | -- 기타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         |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  |
|                |       | 1513.21 | -- 조유(粗油)   | 완전생산기준                                     |
|                |       | 1513.29 | -- 기타   | 완전생산기준                                     |
|                | 15.14 |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5 |         |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6 |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br>세번변경기준                              |
|                | 15.17 |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계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8 | 1518.00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0 | 1520.0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1 |         |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5.22 | 1522.00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b>제4부</b>                             |       |         |  |  |
| <b>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품</b> |       |         |  |  |
| <b>16</b>                              |       |         | <b>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b>   |  |
|  | 16.01 | 1601.00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脛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 |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脛肉)이나 피  |  |
|  |       | 1602.10 | - 균질화한 조제품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20 |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602.31 | -- 칠면조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1602.32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 )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3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돼지로 만든 것:  |   |
|                |       | 1602.41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42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4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50 | - 소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2.90 |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3 | 1603.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
|                |       |         |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   |
|                |       | 1604.11 | -- 연어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4.12 | -- 청어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4.13 | -- 정어리·사르디넬라( <i>Sardinella</i> )·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4.14 | --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 <i>Sarda</i> )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1604.15 | -- 고등어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
|                |       | 1604.16 | -- 멸치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1604.17 | -- 뱀장어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1604.1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1604.20 |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
|                |       | 1604.31 | -- 캐비아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1604.32 | -- 캐비아 대용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6.05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17</b>      |       |         | <b>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b>                       |  |
|                | 17.01 |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701.12 | -- 사탕무당   | 2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1212.9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1701.13 |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완전생산기준   |
|                |       | 1701.14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 완전생산기준   |
|                |       |         | - 기타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1701.91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1701.9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7.02 |         |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7.03 |         |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7.04 |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18</b>      |       |         | <b>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b>  |  |
|                | 18.01 | 1801.00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8.02 | 1802.00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8.03 |         |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8.04 | 1804.00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18.05 | 1805.00 |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18.06 |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19</b>      |       |         | <b>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b>  |  |
|                | 19.01 |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9.02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9.03 | 1903.00 |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19.04 |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날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19.05 |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20</b>      |       |         | <b>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b>   |  |
|                | 20.01 |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2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3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4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5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6 | 2006.00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7 |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8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2008.11 | -- 땅콩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008.1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20 | - 파인애플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30 | - 감귤류 과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40 | - 배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50 | - 살구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60 | - 체리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70 |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80 | - 초본류 딸기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
|                |       | 2008.91 | -- 팜 하트(palm heart)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93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i>Vaccinium macrocarpon</i>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i>Vaccinium oxycoccos</i>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i>Vaccinium vitis-idaea</i> )]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8.97 | -- 혼합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8.9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0.09 |         |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오렌지주스  |  |
|                |       | 2009.11 | -- 냉동한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
|                |   | 2009.12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9.1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  |
|                |   | 2009.21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2009.2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  |
|                |   | 2009.31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3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파인애플주스                                    |  |
|                |   | 2009.41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4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50 | - 토마토주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
|                |   | 2009.61 | --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6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사과주스                        |  |
|                |   | 2009.71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7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
|                |       | 2009.81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i>Vaccinium macrocarpon</i>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i>Vaccinium oxycoccos</i>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i>Vaccinium vitis-idaea</i> )] 주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8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009.90 | - 혼합 주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21</b>      |       |         | <b>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b>  |  |
|                | 21.01 |         |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2 |         |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3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4 |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5 | 2105.00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 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
|                |       | 2106.10 |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106.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22</b>      |       |         | <b>제22류: 음료·주류·식초</b>   |  |
|                | 22.01 |         |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2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3 | 2203.00 | 맥주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
|                | 22.04 |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2204.10 |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   |
|                |       | 2204.21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204.2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2204.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204.2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2204.30 | - 그 밖의 포도즙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5 |         |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6 | 2206.00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7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2.08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9 | 2209.00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23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3.01 |         | 육·설육(脣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2 |         |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3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4 | 2304.00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5 | 2305.00 |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6 |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7 | 2307.00 |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8 | 2308.00 |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3.09 |         | 사료용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24</b>      |       |         | <b>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b>  |  |
|                | 24.01 |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4.02 |         |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틸로(cigarillo)·괘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4.03 |         |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 기준   |
| <b>제5부<br/>광물성 생산품</b> |       |         |  |  |
| <b>25</b>              |       |         | <b>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b>  |  |
|                        | 25.01 | 2501.00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2 | 2502.00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3 | 2503.00 |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4 |         | 천연 흑연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5 |         |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6 |         |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 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7 | 2507.00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8 |         |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아스 어스(dinas earth)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09 | 2509.00 | 초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0 |         |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1 |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5.12 | 2512.00 |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 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3 |         |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4 | 2514.00 |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5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6 |         |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7 |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8 |         |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19 |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5.20 |         |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1 | 2521.00 |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2 |         |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3 |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 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4 |         | 석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5 |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6 |         |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8 | 2528.00 |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29 |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형석(螢石)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5.30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26</b>      |       |         | <b>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27</b>      |       |         | <b>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b>  |             |
|                | 27.01 |         |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2 |         |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3 | 2703.00 |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7.04 | 2704.0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5 | 2705.00 |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6 | 2706.00 |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7 |         |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8 |         |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09 | 2709.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10 |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                |       |         |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
|                |       | 2710.12 |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710.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710.20 |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                         |       | 2710.91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 완전생산기준   |
|                         |       | 2710.99 | -- 기타  | 완전생산기준   |
|                         | 27.11 |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12 |         |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3 |         |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14 |         |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15 | 2715.00 |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27.16 | 2716.00 | 전기에너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제6부</b>              |       |         |  |  |
| <b>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b> |       |         |  |  |
| <b>28</b>               |       |         | <b>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b>   |  |
|                         | 28.01 |         |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  |
|                         |       | 2801.10 | - 염소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01.20 | - 요드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01.30 | - 플루오르와 브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28.02          |   | 2802.00 |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28.03          |   | 2803.00 |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28.04          |   |         |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28.05          |   |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06 |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
|                |       | 2806.10 | - 염화수소(염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06.20 | - 클로로황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07 | 2807.00 | 황산과 발연황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08 | 2808.00 | 질산과 황질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09 |         |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8.10 | 2810.00 | 붕산의 산화물과 붕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1 |         |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2 |         |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3 |         |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4 |         |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5 |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br>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  |
|                |       |         |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  |
|                |       | 2815.11 | -- 고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2815.12호의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br>자에서 발생한<br>부가가치가 40<br>퍼센트 이상일<br>것  |
|                |       | 2815.12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소호 제 2<br>815.11호의 것<br>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br>자에서 발생한<br>부가가치가 40<br>퍼센트 이상일<br>것 |
|                |       | 2815.20 |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계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815.30 |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계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16 |         |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br>물·수산화물·과산화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계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17 | 2817.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계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8 |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19 |         |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0 |         | 산화망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1 |         |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 <sub>2</sub> O <sub>3</sub> )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2 | 2822.00 |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3 | 2823.00 | 산화티타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4 |         |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5 |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6 |         |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
|                |       |         | - 플루오르화물  |  |
|                |       | 2826.12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6.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6.30 |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826.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27 |         |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  |
|                |       | 2827.10 | - 염화암모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20 | - 염화칼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염화물                                 |  |
|                |       | 2827.31 | -- 마그네슘 염화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32 | -- 알루미늄 염화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35 | -- 니켈 염화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  |
|                |   | 2827.41 |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  |
|                |   | 2827.51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27.60 |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28 |    |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br>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29 |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br>과요드산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0 |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1 |    | 아이티온산염과 슐폭실산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2 |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3 |    |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황산나트륨    |  |
|                |   | 2833.11 | -- 황산이나트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황산염 |  |
|                |   | 2833.21 | -- 황산마그네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22 | -- 황산알루미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24 | -- 황산니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25 | -- 황산구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27 | -- 황산바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30 | - 명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3.40 |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34 |         |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2834.10 | - 아질산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질산염          |  |
|                |       | 2834.21 | -- 질산칼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4.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35 |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2835.10 |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인산염  |  |
|                |       | 2835.22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5.24 | -- 인산칼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5.25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835.26 | -- 그 밖의 인산칼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5.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폴리인산염   |  |
|                |       | 2835.31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5.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36 |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미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2836.20 | - 탄산이나트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30 |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40 | - 탄산칼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50 | - 탄산칼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60 | - 탄산바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2836.91 | -- 탄산리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92 | -- 탄산스트론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36.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7 |         |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39 |         |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
|                |       |         | - 규산나트륨                    |   |
|                |       | 2839.11 | -- 메타규산나트륨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839.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839.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8.40 |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
|                |       |         |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   |
|                |       | 2840.11 | -- 무수물(無水物)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40.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40.20 | - 그 밖의 붕산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40.30 |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1 |         |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2 |         |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
|                |       | 2842.10 |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842.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3 |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lumina)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4 |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5 |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6 |         |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7 | 2847.00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8.48 | 2848.00 |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49 |         | 탄화물(化學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2849.10 | - 탄화칼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49.20 | - 탄화규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849.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50 | 2850.00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8.52 |         | 무기나 유기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28.53 | 2853.00 |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29</b>      |       |         | <b>제29류: 유기화합품</b>   |  |
|                | 29.01 |         | 비환식탄화수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02 |         | 환식탄화수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03 |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         |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
|                |       | 2903.11 |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12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903.13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14 | -- 사염화탄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15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
|                |   | 2903.21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22 | -- 삼염화에틸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903.23 | -- 사업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유도체                          |  |
|                |   | 2903.31 |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2903.71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2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3 |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4 |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5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6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7 |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8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7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2903.81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82 |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8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2903.91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903.92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 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3.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4 |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5 |         |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포화 1가알코올  |  |
|                |       | 2905.11 | -- 메탄올(메틸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2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3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4 | -- 그 밖의 부탄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6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7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불포화 1가알코올   |  |
|                |   | 2905.22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2가알코올                                |   |
|                |   | 2905.31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05.32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05.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다가알코올                           |   |
|                |   | 2905.41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05.42 | -- 펜타에리트리톨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905.43 | -- 만니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44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45 | -- 글리세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2905.51 | -- 에스클로비놀(INN)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05.5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6 |         |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7 |         | 페놀과 페놀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08 |         |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9 |         |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10 |         | 3 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2910.10 |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0.20 |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0.30 |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0.40 | - 디엘드린(ISO, INN)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0.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1 | 2911.00 |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2 |         |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3 | 2913.00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4 |         |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15 |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  |
|                |       | 2915.11 | -- 포름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12 | -- 포름산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13 | -- 포름산의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  |
|                |   | 2915.21 | -- 초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24 | -- 무수(無水)초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초산에스테르            |  |
|                |   | 2915.31 | -- 초산에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32 | -- 초산비닐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33 | -- 초산노르말부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36 | -- 초산디노셉(ISO)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40 |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50 |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60 | -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70 | -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5.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6 |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2916.11 | -- 아크릴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12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13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14 |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15 | --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 2916.16 | -- 비나파크릴(ISO)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20 |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2916.31 |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32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34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6.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7 |         |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2917.11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12 |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13 |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14 | -- 무수말레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20 |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2917.32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33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917.34 |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35 | -- 무수프탈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36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37 | -- 테레프탈산디메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7.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8 |         |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918.11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18.12 | -- 타르타르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18.13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18.14 | -- 시트르산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18.15 |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18.16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918.18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2918.21 | -- 살리실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22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23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30 | -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2918.91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18.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9 |         |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0 |         |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29.21 |         | 아민관능화합물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2921.11 | --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2921.21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22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30 |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2921.41 | -- 아닐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2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3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4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5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6 |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2921.51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1.5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       | 2922.11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12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922.13 |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22.14 | --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22.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br>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   | 2922.21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2922.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br>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
|                |   | 2922.31 | --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염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   | 2922.41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42 | -- 글루탐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43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44 | -- 틸리딘(INN)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2922.4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22.50 | -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 |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4 |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5 |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6 |         | 니트릴관능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29.27 | 2927.00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9.28 | 2928.0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9.29 |         |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9.30 |         | 유기-황 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9.31 |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29.32 |         |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br>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2.11 | -- 테트라히드로푸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12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13 |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20 | - 락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2932.91 | -- 이소사프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92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93 | -- 피페로날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94 | -- 사프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95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2.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3 |         |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3.11 |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3.21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3.31 | -- 피리딘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32 | -- 피페리딘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2933.33 |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2933.41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3.52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53 |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54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55 | -- 로프라졸람(INN)·메크로과론(INN)·메타과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2933.61 | -- 멜라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6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락탐   |  |
|                |   | 2933.71 | -- 6-핵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72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79 | -- 그 밖의 락탐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2933.91 |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3.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29.34 |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2934.10 | -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4.20 |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4.30 |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2934.91 | --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2934.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5 | 2935.00 | 술폰아미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6 |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7 |         |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8 |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9 |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0 | 2940.00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1 |         | 항생물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2 | 2942.00 | 그 밖의 유기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b>30</b>      |       |         | <b>제30류: 의약품</b>  |  |
|                | 30.01 |         |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0.02 |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0.03 |         |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0.04 |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0.05 |         |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나 포장을 한 것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0.06 |         |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
|                |       | 3006.10 |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 (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20 | - 혈액형 분류용 시약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30 |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40 |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50 | - 구급상자와 구급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60 |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70 |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3006.91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006.92 | -- 폐(廢)의료용품   | 완전생산기준   |
| <b>31</b>      |       |         | <b>제31류: 비료</b>   |  |
|                | 31.01 | 3101.00 |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1.02 |         |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1.03 |         |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31.04 |         |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1.05 |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3102호 부터 제 31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2             |       |         | <b>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b>  |   |
|                | 32.01 |         |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2 |         |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   |
|                |       | 3202.10 | - 합성 유기유연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202.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3 | 3203.00 |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4 |         |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5 | 3205.00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6 |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
|                |       | 3206.11 |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3206.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3206.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 3206.1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206.20 |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   |
|                |   | 3206.41 |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206.42 |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206.4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206.50 |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7 |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8 |         |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09 |         |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0 | 3210.00 | 그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이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1 | 3211.00 | 조제 드라이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2 |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 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템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3 |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4 |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2.15 |    |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3             |       |    | <b>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4             |       |    | <b>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b> |  |
|                | 34.01 |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2 |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3402.11 | -- 음이온성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402.12 | -- 양이온성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402.13 | -- 비이온성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402.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402.20 | - 소매용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3402.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3 |         |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4 |         |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5 |         |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6 | 3406.00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4.07 | 3407.0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35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                | 35.01 |         |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2 |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3 | 3503.00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4 | 3504.00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5 |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  |
|                |       | 3505.10 |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3505.20 | - 글루(glu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6 |    |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5.07 |    |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6             |       |    | <b>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7             |       |    | <b>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38             |       |    | <b>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b>   |  |
|                | 38.01 |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2 |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廢獸炭)을 포함한다]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3 | 3803.00 |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4 | 3804.00 |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5 |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 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 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6 |         |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7 | 3807.00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8 |         |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기준 (다만, 유효성분의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원산지제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8.09 |    |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0 |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1 |    |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화학반응                              |
|                | 38.12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38.13 | 3813.00 |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4 | 3814.00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5 |         |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6 | 3816.00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7 | 3817.00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18 | 3818.00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38.19 | 3819.00 |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20 | 3820.00 |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21 | 3821.00 |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22 | 3822.00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23 |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8.24 |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약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화학반응   |
|   | 38.25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 완전생산기준   |
|   | 38.26 | 3826.00 |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7부</b><br><b>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b> |       |         |   |  |
| <b>39</b>                                 |       |         | <b>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b>   |  |
|   | 39.01 |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2 |         |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3 |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4 |         |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39.05 |         |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6 |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7 |         |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8 |         |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09 |         |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0 |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39.11 |         | 석유수지·쿠마론 - 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솔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2 |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3 |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4 | 3914.00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5 |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39.16 |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7 |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8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19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1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2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3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4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5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39.26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40</b>      |       |         | <b>제40류: 고무와 그 제품</b>   |  |
|                | 40.01 |         |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40.02 |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3 | 4003.00 |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40.04 | 4004.00 |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40.05 |         |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6 |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7 | 4007.00 |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8 |         | 고무로 만든 판(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9 |         |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0 |         |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 |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2 |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3 |    |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4 |    |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5 |    |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 인지는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6 |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7 | 4017.00 |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8부</b>  |       |         |  |  |
| <b>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b> |       |         |  |  |
| <b>41</b>   |       |         | <b>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b>  |  |
|   | 41.01 |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02 |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03 |         |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04 |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41.05 |         |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06 |         |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07 |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12 | 4112.00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13 |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1.14 |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41.15 |         |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i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42             |       |         | <b>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43             |       |         | <b>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b>  |  |
|                | 43.01 |         |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3.02 |         |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3.03 |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3.04 | 4304.00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9부</b>   |       |         |   |  |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기타의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  |
| <b>44</b>  |       |         | <b>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b>   |  |
|  | 44.01 |         |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2 |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3 |         |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4 |         |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 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5 | 4405.00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44.06 |         |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7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8 |         |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09 |         |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44.11 |         |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44.12 |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44.13 | 4413.00 |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4 | 4414.00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5 |         |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릿(pallet), 박스팔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 칼러(pallet colla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6 | 4416.00 | 나무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튜브(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7 | 4417.00 |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8 |         | .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19 | 4419.00 | 목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20 |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 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4.21 |         | 그 밖의 목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45             |       |         | <b>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46             |       |         | <b>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b>   |  |
|                | 46.01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  |
|                |       | 4601.21 | -- 대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1.22 | -- 등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1.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4601.92 | -- 대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1.93 | -- 등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1.94 |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1.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6.02 |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
|                |       |         |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  |
|                |       | 4602.11 | -- 대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2.12 | -- 등나무로 만든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2.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14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602.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b>이·판지와 이들의 제품</b> |       |         |  |  |
| 47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 47.01 | 4701.00 | 기계목재펄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2 | 4702.00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3 |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4 |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5 | 4705.00 |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6 |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7.07 |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완전생산기준   |
| <b>48</b>      |       |         | <b>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b>  |  |
|                | 48.01 | 4801.00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2 |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 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 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3 | 4803.00 |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울룩볼룩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4 |         |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  |
|                |       | 4804.11 | -- 표백하지 않은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1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  |
|                |   | 4804.21 | -- 표백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2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4804.31 | -- 표백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3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4804.41 | -- 표백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4804.42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4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4804.51 | -- 표백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52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4.5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5 |         |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6 |         | 황산지·내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 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7 | 4807.00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8 |         |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록볼록 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4808.10 |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8.40 |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48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4808.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09 |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0 |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1 |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2 | 4812.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3 |         | 꺾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4 |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6 |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7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8 |    |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스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19 |    |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20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21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22 |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콤파(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48.23 |         |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49                        |       |         | <b>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1부</b>               |       |         |   |  |
| <b>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b> |       |         |   |  |
| 50                        |       |         | <b>제50류: 견</b>  |  |
|                           | 50.01 | 5001.00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0.02 | 5002.00 | 생사(꾼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0.03 | 5003.00 |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다]   |  |
|                | 50.04 | 5004.00 |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0.05 | 5005.00 |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0.06 | 5006.00 |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제 5004호 또는 제 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50.07 |         |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51</b>      |       |         | <b>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b>                                     |  |
|                | 51.01 |         |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2 |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3 |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4 | 5104.00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5 |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6 |         |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7 |         |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8 |         |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09 |         |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106호 부터 제 5108호까지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것은 제외한다)                                     |
|                | 51.10 | 5110.0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11 |         |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12 |         |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1.13 | 5113.00 |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52</b>      |       |         | <b>제52류: 면</b>   |  |
|                | 52.01 | 5201.00 |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2 |         |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3 | 5203.00 |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4 |         |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5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6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7 |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5205호 또는 제 5206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52.08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09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10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52.11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2.12 |         | 그 밖의 면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53</b>      |       |         | <b>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b>   |             |
|                | 53.01 |         |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2 |         |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3 |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5 | 5305.00 |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6 |         | 아마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7 |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8 |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09 |         | 아마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10 |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3.11 | 5311.00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54</b>      |       |         | <b>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b>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b>과 이와 유사한 것</b>  |             |
|                | 54.01 |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2 |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3 |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4 |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 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5 | 5405.00 |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6 | 5406.00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7 |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4.08 |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55</b>      |       |         | <b>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b>  |             |
|                | 55.01 |         | 합성필라멘트 토크(tow)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2 | 5502.0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크(tow)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3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4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5 |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6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7 | 5507.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준   |
|                | 55.08 |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09 |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0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1 |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5509호 또는 제 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55.12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3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
|                |       | 5513.1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3.12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3.13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3.1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염색한 것  |   |
|                |       | 5513.2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3.23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3.2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       | 5513.3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3.3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날염한 것  |   |
|                |       | 5513.4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3.4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4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
|                |       | 5514.1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5514.12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4.1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염색한 것   |   |
|                |       | 5514.2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22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23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2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3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날염한 것   |   |
|                |       | 5514.41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42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43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4.49 | --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5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5.16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   | 5516.1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12 | -- 염색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6.13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14 | -- 날염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   | 5516.2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22 | -- 염색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6.23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24 | -- 날염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   | 5516.3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32 | -- 염색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6.33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34 | -- 날염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   | 5516.4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42 | -- 염색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516.43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44 | -- 날염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기타   |   |
|                |   | 5516.9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5509호 부터 제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 5516.92 | -- 염색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
|                |       | 5516.93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제 5509<br>호 부터 제<br>5511호까지의<br>것은 제외한다) |
|                |       | 5516.94 | -- 날염한 것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b>56</b>      |       |         | <b>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br/>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b>   |  |
|                | 56.01 |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br>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br>ust)와 밀네프(mill nep)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2 |         |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3 |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4 |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br>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br>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br>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5 | 5605.00 |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br>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br>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br>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6 | 5606.00 |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br>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br>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br>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br>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br>-yarn)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7 |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여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br>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br>없다]   | 2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56.08 |         |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br>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품으로 만든 그물  |             |
|                |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       | 5608.11 | -- 제품으로 된 어망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608.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5608.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56.09 | 5609.00 |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57             |       |         | <b>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58             |       |         | <b>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59             |       |         | <b>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60             |       |         | <b>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61             |       |         | <b>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62             |       |         | <b>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63             |       |         | <b>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b>                            |             |
|                | 63.01 |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2 |         |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3 |         |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벨런스(valance)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4 |         |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5 |         | 포장용 빈 포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6 |         |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
|                |       |         | -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  |
|                |       | 6306.12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6306.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 - 텐트                                    |  |
|                |       | 6306.22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6306.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6306.30 | - 돛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6306.40 |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6306.90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7 |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  |
|                |       | 6307.10 | -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6307.20 |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6307.90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8 | 6308.00 |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09 | 6309.00 |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63.10 |         | 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b>제12부</b>  |       |         |   |  |
| <b>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b> |       |         |   |  |
| <b>64</b>  |       |         | <b>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b>  |  |
|  | 64.01 |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그(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2 |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3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64.04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5 |    | 그 밖의 신발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64.06 |    |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65             |       |    | <b>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66             |       |    | <b>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67             |       |    | <b>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b>제13부</b>   |       |         |  |  |
| <b>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b> |       |         |  |  |
| 68  |       |         | <b>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69  |       |         | <b>제69류: 도자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70  |       |         | <b>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b>  |  |
|   | 70.01 | 7001.00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2 |         |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3 |         |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4 |         |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5 |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6 | 7006.00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7 |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8 | 7008.00 |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003호 부터 제 70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09 |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0 |         |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1 |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3 |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4 | 7014.00 |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5 |         |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6 |         |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7 |         |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8 |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19 |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0.20 | 7020.0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4부</b>   |       |         |  |  |
| <b>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b> |       |         |  |  |
| 71  |       |         | <b>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b>  |  |
|   | 71.01 |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꿰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71.02 |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                |       | 7102.10 | - 선별하지 않은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공업용  |  |
|                |       | 7102.21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공업용이 아닌 것  |  |
|                |       | 7102.31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2.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3 |         |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 것·장착되거나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  |
|                |       | 7103.10 |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                |       | 7103.91 |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3.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4 |         |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썬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썬 것을 포함한다) |  |
|                |       | 7104.10 | - 압전기용 석영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4.20 |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4.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5 |         |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6 |         |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7 | 7107.00 |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8 |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화폐용이 아닌 것   |  |
|                |       | 7108.11 | -- 가루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8.12 |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 2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8.13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108.20 | - 화폐용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9 | 7109.00 |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0 |         |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1 | 7111.00 |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2 |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71.13 |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 |    |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5 |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6 |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 |    | 모조 신변장식용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8 |    | 주화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5부<br/>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b> |       |    |  |  |
| <b>72</b>                      |       |    | <b>제72류: 철강</b>  |  |
|                                | 72.01 |    |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2 |    | 합금철(ferro-alloy)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3 |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4 |    |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72.05 |    |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6 |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7 |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6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8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7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9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8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0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8호 또는 제 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1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8호 또는 제 7209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2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8호 부터 제 72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3 |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4 |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13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5 |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13호 또는 제 7214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6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08호 부터 제 721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7 |    |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8 |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 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72.19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7219.11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12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13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14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  |
|                |       | 7219.21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7219.22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23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24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   | 7219.31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32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33 |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7219.34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35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7219.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1 | 7221.00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2 |         |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3 | 7223.00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4 |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5 |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6 |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225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7 |         |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72.28 |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제 722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9 |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73</b>      |       |         | <b>제73류: 철강의 제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74</b>      |       |         | <b>제74류: 구리와 그 제품</b>                                     |  |
|                | 74.01 | 7401.00 |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2 | 7402.00 |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3 |         |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4.04 | 7404.00 |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74.05 | 7405.00 |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4.06 |         |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4.07 |         |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4.08 |         | 구리의 선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4.09 |         | 구리의 판(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br>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74.10 |         |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1 |         | 구리로 만든 관(管)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2 |         |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3 | 7413.00 |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5 |         |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8 |         |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74.19 |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b>75</b>      |       |         | <b>제75류: 니켈과 그 제품</b>                               |   |
|                | 75.01 |         |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br>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5.02 |         | 니켈의 괴(塊)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5.03 | 7503.00 |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
|                | 75.04 | 7504.00 |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5.05 |         |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75.06 |         |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7 |         |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8 |         |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76</b>      |       |         | <b>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b>   |  |
|                | 76.01 |         | 알루미늄의 괴(塊)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2 | 7602.0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76.03 |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4 |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76.05 |         | 알루미늄의 선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제 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6 |         |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7 |         |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8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9 | 7609.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0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탐·격자주(格子柱)·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 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1 | 7611.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2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3 | 7613.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4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5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6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78</b>      |       |         | <b>제78류: 납과 그 제품</b>                  |  |
|                | 78.01 |         | 납의 괴(塊)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8.02 | 7802.00 |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78.04 |         | 납의 판(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8.06 | 7806.00 |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79</b>      |       |         | <b>제79류: 아연과 그 제품</b>                 |  |
|                | 79.01 |         | 아연의 괴(塊)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9.02 | 7902.00 |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79.03 |         |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9.04 | 7904.00 |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9.05 | 7905.00 |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79.07 | 7907.00 |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0</b>      |       |         | <b>제80류: 주석과 그 제품</b>       |  |
|                | 80.01 |         | 주석의 괴(塊)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0.02 | 8002.00 |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80.03 | 8003.00 |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0.07 | 8007.00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1</b>      |       |         | <b>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b> |  |
|                | 81.01 |         |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1.10 | -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101.94 |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1.96 | -- 선(線)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1.97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1.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1.02 |         |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2.10 | -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102.94 |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2.95 |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sheet)·스트립·박(箔)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2.96 | -- 선(線)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2.97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2.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1.03 |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3.20 |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3.3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3.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 |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 - 괴(塊)  |  |
|                |       | 8104.11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4.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4.2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4.30 |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4.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5 |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5.20 |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5.3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5.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6 | 8106.00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7 |         |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7.20 | - 카드뮴의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7.3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7.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8 |         |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8.20 | - 티타늄의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08.3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8.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9 |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09.20 |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109.3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09.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0 |         |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8110.10 |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10.2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10.9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1 | 8111.00 |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2 |         |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 ( 컬럼뵈)·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       |         | - 베릴륨  |  |
|                |       | 8112.12 | --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12.13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12.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크로뮴                      |  |
|                |   | 8112.21 | --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12.22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   | 811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탈륨                       |  |
|                |   | 8112.51 | -- 괴(塊), 가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12.52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112.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112.92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112.9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3 | 8113.00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82             |       |         | <b>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b>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83             |       |         | <b>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b>   |  |
|                | 83.01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301.10 | - 자물쇠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301.20 |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301.30 |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301.40 | - 그 밖의 자물쇠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301.50 |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301.6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301.70 |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2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 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3 | 8303.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4 | 8304.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5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6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3.07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 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8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 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9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10 | 831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3.11 |         |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6부</b>  |       |         |  |  |
| <b>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b> |       |         |  |  |
| <b>84</b>  |       |         | <b>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b>  |  |
|  | 84.01 |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8401.10 | - 원자로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1.20 |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1.30 |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1.40 | - 원자로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02 |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br>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br>boiler) |   |
|                |       |         | - 증기발생보일러   |   |
|                |       | 8402.11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2.12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2.19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2.20 |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03 |         | 중양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8403.10 | - 보일러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0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4.04 |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
|                |       | 8404.10 |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4.20 |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5 |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8405.10 |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5.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6 |         | 증기터빈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06.10 | - 선박추진용 터빈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터빈                         |  |
|                |       | 8406.81 |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6.82 |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6.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7 |         |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8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  |
|                |       | 8408.10 | - 선박추진용 엔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8.20 |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08.90 | - 그 밖의 엔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9 |         |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 |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
|                |       |         | - 수력터빈과 수차                            |  |
|                |       | 8410.11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0.12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0.13 |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0.90 |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 |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
|                |       |         | - 터보제트                   |  |
|                |       | 8411.11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1.12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터보프로펠러                 |  |
|                |       | 8411.21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1.22 |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가스터빈              |   |
|                |       | 8411.81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1.82 |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11.91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1.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12 |         | 그 밖의 엔진과 모터              |   |
|                |       | 8412.10 |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
|                |       | 8412.21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  |
|                |   | 8412.31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2.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2.8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4.13 |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13.11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20 | - 수직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30 |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40 | - 콘크리트 펌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50 |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60 |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70 | - 그 밖의 원심펌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8413.81 | -- 펌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82 | -- 액체엘리베이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13.91 | -- 펌프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3.92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14 |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br>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8414.10 | - 진공펌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4.20 |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4.30 |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4.40 |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팬   |   |
|                |       | 8414.51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br>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4.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4.60 |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4.8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 |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       | 8415.10 | - 창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5.20 |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415.81 |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br>열펌프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5.82 |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5.83 |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15.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16 |         |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br>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br>(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       | 8416.10 |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6.20 |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6.30 |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6.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 |         |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
|                |       | 8417.10 |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7.20 |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7.80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7.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 |         |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
|                |       | 8418.10 |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가정형 냉장고   |  |
|                |       | 8418.21 | -- 압축식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30 |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40 |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50 |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  |
|                |   | 8418.61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6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18.91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8.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 |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
|                |       |         |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  |
|                |       | 8419.11 | --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20 | -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건조기  |  |
|                |       | 8419.31 | -- 농산물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19.32 | --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40 | - 증류기나 정류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50 | - 열교환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60 | - 기체 액화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기                      |  |
|                |   | 8419.81 |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419.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19.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0 |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8420.10 |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20.91 | -- 실린더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0.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과기나 청정기               |   |
|                |   |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   | 8421.11 | -- 크림분리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21.12 | -- 의류 탈수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21.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
|                |   | 8421.21 |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21.22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21.23 |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1.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  |
|                |       | 8421.31 |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1.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421.91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1.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 |         |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
|                |   |         | - 접시세척기  |  |
|                |   | 8422.11 | -- 가정형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2.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2.20 |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2.30 | -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2.40 |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 |         |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  |
|                |       | 8423.10 |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3.20 |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3.30 |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  |
|                |       | 8423.81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3.82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3.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3.90 |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 |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       | 8424.10 |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4.20 |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4.30 |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기   |  |
|                |       | 8424.81 | -- 농업용이나 원예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4.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2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5 |         |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잭(jack)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6 |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7 |         |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8 |         |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9 |         |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0 |         |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1 |         |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 |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  |
|                |       | 8432.10 | - 플라우(쟁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32.21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2.30 |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2.40 | -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2.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4.33 |         |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
|                |       |         |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  |
|                |       | 8433.11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20 |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30 |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40 |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  |
|                |       | 8433.51 | -- 수확·탈곡 겸용기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52 | -- 그 밖의 탈곡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53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60 |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4 |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34.10 | - 착유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4.20 | - 낙농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5 |         |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8435.10 | -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5.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 |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8436.10 |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8436.21 |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6.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6.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36.91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6.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4.37 |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  |
|                |       | 8437.10 |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7.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7.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 |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  |
|                |       | 8438.10 |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38.20 |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438.30 | - 설탕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8.40 | - 양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8.50 |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8.60 | - 과일·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8.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8.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4.39 |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br>가공용 기계 |   |
|                |       | 8439.10 |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9.20 |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9.30 | -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39.91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39.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4.40 |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
|                |       | 8440.10 | -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0.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1 |         |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8441.10 | - 절단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1.20 |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1.30 |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1.40 |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441.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2 |         |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
|                |       | 8442.30 | - 기계류·장치·장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2.40 |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2.50 |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84.43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  |
|                |       | 8443.11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12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13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14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15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16 | -- 곡면인쇄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43.17 | --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43.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br>없다)                           |   |
|                |   | 8443.31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br>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43.32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43.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8443.91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3.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4 | 8444.00 |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5 |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6 |         | 직기(직조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7 |         |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튠(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8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피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  |
|                |       | 8448.11 | --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20 |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제8445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8448.31 | -- 침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32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33 | -- 스피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8448.42 |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48.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제8447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8448.51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48.5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9 | 8449.00 |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 |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8450.11 | -- 완전자동 세탁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0.12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0.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0.20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0.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 |         |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 [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 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  |
|                |       | 8451.10 | - 드라이클리닝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건조기  |  |
|                |       | 8451.21 |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1.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51.30 |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1.40 | - 세탁기·표백기·염색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1.50 | -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1.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 |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  |
|                |       | 8452.10 | - 가정형 재봉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재봉기   |  |
|                |       | 8452.21 | -- 자동식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2.30 | - 재봉기용 바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2.90 |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3 |         |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가·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  |
|                |       | 8453.10 | -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가·유피(柔皮)기·가공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53.20 |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3.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 |         |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  |
|                |       | 8454.10 | - 전로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4.20 |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4.30 | - 주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5 |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       | 8455.10 | - 관 압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압연기                   |  |
|                |       | 8455.21 |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5.22 | -- 냉간(冷間) 압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5.30 | - 압연기용 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5.90 | - 그 밖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6 |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7 |         |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8 |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
|                |       |         | - 수평 선반   |   |
|                |       | 8458.1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8.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선반  |   |
|                |       | 8458.9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8.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9 |         |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                |       | 8459.10 |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
|                |       | 8459.2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   |
|                |   | 8459.3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40 |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무륜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
|                |   | 8459.5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5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
|                |   | 8459.6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6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59.70 |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0 |         |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 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
|                |       |         | -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60.1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0.1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그 밖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최소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60.2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0.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60.3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0.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60.40 |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0.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1 |         |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2 |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편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
|                |       | 8462.10 | -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   |
|                |   | 8462.2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2.2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   |
|                |   | 8462.3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2.3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8462.41 | -- 수치제어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2.4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462.91 | -- 액압 프레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것   |
|                |       | 8462.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br>( 소호 제 8537.10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3 |         |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4 |         |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 기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5 |         |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6 |         |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속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 |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압축공기식의 것                      |  |
|                |   | 8467.11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전동기를 갖춘 것                     |  |
|                |   | 8467.21 | -- 각종 드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22 | -- 톱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공구                       |  |
|                |   | 8467.81 | -- 체인톱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67.91 | -- 체인톱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92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7.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8 |         | 납땜용·땀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68.10 | - 수지식 취관(吹管)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8.20 |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8.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68.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9 | 8469.00 |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0 |         |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1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2 |         |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3 |         |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4 |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  |
|                |       | 8474.10 |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4.20 | - 파쇄기나 분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혼합기나 반죽기  |  |
|                |       | 8474.31 |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4.32 |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행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4.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4.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5 |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
|                |       | 8475.10 |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
|                |       | 8475.21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5.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5.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6 |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음료 자동판매기                              |  |
|                |       | 8476.21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6.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계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76.81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6.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6.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7 |         |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77.10 | - 사출 성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20 | - 압출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30 | - 취입 성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40 | - 진공 성형기와 그 밖의 열 성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성형기  |  |
|                |       | 8477.51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80 | -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7.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8 |         |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78.10 | - 기계류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8.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 |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479.10 |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9.20 |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9.3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9.40 |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479.50 |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79.60 | - 증발식 에어컨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탑승교  |   |
|                |   | 8479.71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79.7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기  |   |
|                |   | 8479.81 |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79.82 |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9.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79.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0 |         |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 [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 |         |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  |
|                |       | 8481.10 | - 감압밸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1.20 |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481.30 | - 체크(논리턴)밸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1.40 | - 안전밸브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1.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 |         |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
|                |       | 8482.10 | - 볼베어링(ball bearing)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2.20 |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482.30 |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82.40 |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82.50 |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82.80 |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482.91 | -- 볼·니들·롤러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482.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 |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
|                |       | 8483.10 |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20 |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30 |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40 |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50 |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60 |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3.90 | - 날이 붙은 휠, 체인sprocket(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4 |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 |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8486.10 |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6.20 |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6.30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6.40 |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486.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7 |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5</b>      |       |         | <b>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b> |  |
|                | 85.01 |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2 |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3 | 8503.00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 |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
|                |       | 8504.10 |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유입식변압기  |  |
|                |       | 8504.21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22호 또는 제 8504.23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22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21호 또는 제 8504.23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체약당사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23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21호 또는 제 8504.22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변압기                         |  |
|                |   | 8504.31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32호 또는 제 8504.34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32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31호, 제 8504.33호 또는 제 8504.34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33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31호, 제 8504.32호 또는 제 8504.34호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34 |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br>(소호 제 8504.31호 부터 제 8504.33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br>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40 | - 정지형 변환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50 | - 그 밖의 유도자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5 |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
|                |       |         |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
|                |       | 8505.11 | -- 금속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5.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5.20 |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5.9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5.06 |         | 일차전지           |   |
|                |       | 8506.10 |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30 |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40 | - 산화은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50 | - 리튬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60 | - 에어징크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80 | - 그 밖의 일차전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6.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5.07 |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br>관없다) |   |
|                |       | 8507.10 |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7.20 |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7.30 | - 니켈-카드뮴 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7.40 | - 니켈-철 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07.50 |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7.60 | - 리튬이온 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7.80 | - 그 밖의 축전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7.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8 |         | 진공청소기  |  |
|                |       |         | - 전동기를 갖춘 것  |  |
|                |       | 8508.11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8.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8508.60 | - 그 밖의 진공청소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8.7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9 |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  |
|                |       | 8509.40 |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9.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09.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0 |         |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510.10 | - 면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0.20 | - 이발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0.30 | - 모발제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0.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 |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 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 8511.10 | - 점화플러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1.20 |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511.30 | - 배전기와 점화코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1.40 |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1.50 | - 그 밖의 발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1.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 |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                |       | 8512.10 |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2.20 |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2.30 | - 음향신호용 기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2.40 | -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3 |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
|                |       | 8513.10 | - 전등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51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5.14 |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
|                |       | 8514.10 |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4.20 |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4.30 |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4.40 |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4.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5 |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
|                |       |         | - 땜질용이나 납땜용 기기  |  |
|                |       | 8515.11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5.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  |
|                |       | 8515.21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5.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 기기   |  |
|                |       | 8515.31 | --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5.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5.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5.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 |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8516.10 |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
|                |   | 8516.21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6.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전기가열식 이용기거나 손 건조기 |   |
|                |   | 8516.31 | -- 헤어드라이어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6.32 | -- 그 밖의 이용기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6.33 | -- 손 건조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16.40 | - 전기다리미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50 |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60 | - 그 밖의 오븐, 쿠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
|                |   | 8516.71 | --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72 | -- 토스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7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80 | - 전열용 저항체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6.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 |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  |
|                |       | 8517.11 |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7.12 |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7.18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       | 8517.61 | -- 기지국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7.62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7.6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7.7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  |
|                |       | 8518.10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8518.21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22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30 |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40 | - 가청주파증폭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50 | - 음향증폭세트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18.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 |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1 |         |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2 |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 |         |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5 |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 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6 |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7 |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 |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9 |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0 |         |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 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8530.10 |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0.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0.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 |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8531.10 |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1.20 |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1.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5.32 |         |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   |
|                |       | 8532.10 |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   |
|                |       | 8532.21 | -- 탄탈륨의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2.22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2.23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2.24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2.25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2.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2.30 |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3 |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  |
|                |       | 8533.10 |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  |
|                |       | 8533.21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533.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  |
|                |       | 8533.31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3.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3.40 |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4 | 8534.00 | 인쇄회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5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7 |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8 |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 |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
|                |       | 8539.10 | -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다)   |  |
|                |   | 8539.21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9.22 |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9.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
|                |   | 8539.31 |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9.32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39.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   |
|                |       | 8539.41 | -- 아크램프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9.4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39.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85.40 |         |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br>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   |
|                |       |         |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   |
|                |       | 8540.11 | -- 천연색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br>이상일 것 |
|                |       | 8540.12 | -- 단색  | 6단위 세번변경<br>기준 또는 체약<br>당사자에서 발<br>생한 부가가치<br>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540.20 |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0.40 |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0.60 | - 그 밖의 음극선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  |
|                |   | 8540.71 | -- 자전관(magnetron)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0.7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관  |  |
|                |   | 8540.81 | -- 수신관이나 증폭관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0.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   |  |
|                |       | 8540.91 | -- 음극선관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0.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 |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8541.10 |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  |
|                |       | 8541.21 |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2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30 |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40 |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50 | - 그 밖의 반도체디바이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60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 |         | 전자집적회로  |  |
|                |       |         | - 전자집적회로  |  |
|                |       | 8542.31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2.32 | -- 메모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2.33 | -- 증폭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2.3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2.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5.43 |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543.10 | - 입자가속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3.20 | - 신호발생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3.30 |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3.7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54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4 |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5 |         |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6 |         |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7 |         |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8 |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548.10 |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완전생산기준   |
|                            |       | 8548.90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7부</b>                |       |         |  |  |
| <b>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b> |       |         |  |  |
| 86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7</b>      |       |         | <b>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b>   |   |
|                | 87.01 |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2 |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 |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4 |         | 화물자동차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5 |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   |
|                |       | 8705.10 | - 기중기차(crane lorry)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05.20 |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8705.30 | - 소방차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05.40 |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05.90 | - 기타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6 | 8706.00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7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9 |         |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0 | 8710.0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87.11 |         |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2 | 8712.00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3 |         | 신체장애이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4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8714.10 |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20 | - 신체장애이용 차량의 것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기타  |   |
|                |       | 8714.91 |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2 |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3 |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휠(sprocket-wheel)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4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5 | -- 안장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6 |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8714.99 | -- 기타  |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5 | 8715.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6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8</b>  |       |         | <b>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89</b>  |       |         | <b>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b>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8부</b>  |       |         |   |  |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b>90</b>  |       |         | <b>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b>   |  |
|  | 90.01 |         |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90.02 |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3 |         |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  |
|                |       |         | - 테와 장착구  |  |
|                |       | 9003.11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3.19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4 |         |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5 |         |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한다)   |  |
|                |       | 9005.10 | - 쌍안경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5.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5.90 |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 |         |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       | 9006.10 | - 인쇄제판용 사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30 |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40 | - 즉석인화 사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사진기  |  |
|                |   | 9006.51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 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52 |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53 |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5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
|                |   | 9006.61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6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9006.91 | -- 카메라용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6.9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7 |         |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9007.10 | - 촬영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7.20 | - 영사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9007.91 | -- 촬영기용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7.92 | -- 영사기용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8 |         |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  |
|                |       | 9008.50 | -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08.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0 |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  |
|                |       | 9010.10 |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0.50 |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9010.60 | - 영사용 스크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0.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1 |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  |
|                |       | 9011.10 | - 입체현미경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1.20 |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1.80 | - 그 밖의 현미경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1.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2 |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
|                |       | 9012.10 |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2.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3 |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013.10 |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3.20 |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3.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3.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4 |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
|                |       | 9014.10 |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4.20 |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4.80 |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4.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5 |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9015.10 | - 거리측정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5.20 |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5.30 | - 수준기(水準器)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5.40 | - 사진측량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5.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5.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90.16 | 9016.00 |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7 |         |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017.10 |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7.20 | -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7.30 |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7.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17.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8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9 |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0 | 9020.00 |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1 |         |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2 |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9022.12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13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14 |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19 | -- 그 밖의 용도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   | 9022.21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29 | -- 그 밖의 용도의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30 | - 엑스선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2.90 |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3 | 9023.00 |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4 |         |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
|                |       | 9024.10 | - 금속재료 시험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4.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4.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5 |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025.11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5.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5.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5.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6 |         |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9026.10 |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6.20 |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6.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6.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7 |         |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  |
|                |       | 9027.10 |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 9027.20 |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7.30 |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7.50 |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7.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7.90 |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8 |         |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  |
|                |       | 9028.10 | - 기체용 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8.20 | - 액체용 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8.30 | - 전기용 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8.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9 |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
|                |       | 9029.10 |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29.20 |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9029.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 |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
|                |       | 9030.10 |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20 |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
|                |       | 9030.31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32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33 |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39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40 |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기   |  |
|                |   | 9030.82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84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0.8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9030.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1 |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9031.10 | - 균형 시험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1.20 | - 테스트벤치(test bench)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  |
|                |       | 9031.41 |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1.4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1.80 | - 그 밖의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1.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 |         |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  |
|                |       | 9032.10 |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2.20 | - 매노우스타트(manostat)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 - 그 밖의 기기          |  |
|                |       | 9032.81 | -- 액압식이나 공기식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2.89 | -- 기타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032.90 | -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3 | 9033.00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91</b>      |       |         | <b>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b>   |  |
|                | 91.01 |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2 |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3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4 | 9104.00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91.05 |         | 그 밖의 클록(clock)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6 |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7 | 9107.00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8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09 |         |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10 |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91.11 |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       | 9111.10 |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111.2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111.80 | - 그 밖의 케이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111.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12 |         |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1.13 |         |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이상일 것  |
|                                     | 91.14 |    |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92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19부</b><br>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93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20부</b><br>잡품                   |       |    |  |  |
| 94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95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96                                  |       |    | 제96류: 잡품   |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96.01 |         |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2 | 9602.00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3 |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4 | 9604.00 | 수동식 চে와 어레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5 | 9605.00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6 |         |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96.07 |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
|                |       |         |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  |
|                |       | 9607.11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607.19 | -- 기타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607.2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 |         |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9 |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0 | 9610.00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1 | 9611.00 |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2 |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3 |         |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  |
|                |       | 9613.10 |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613.20 |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613.80 | - 그 밖의ライター  | 6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 9613.90 | -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4 | 9614.00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5 |         |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6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7 | 9617.00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8 | 9618.00 |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9 | 9619.00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

| HS 코드(HS 2012)                    |   |    | 품목명               | 품목별 원산지<br>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                                   |   |    |                   |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b>제21부</b><br><b>예술품·수집품·골동품</b> |   |    |                   |  |
| 97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체약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